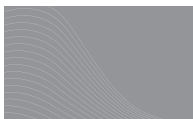


## 제 2 장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국제 협력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과제

노리꼬 아이까와-포르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자문관

김 찬 문화재청 차장님, 세실 듀벨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과장님, 박성용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소장님, 임돈희 교수님, 회의 참가자, 신사숙녀 여러분,

아태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카테고리 2)의 설립을 위한 한국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체결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세실 듀벨 과장과 함께 대한민국 센터의 성공적인 설립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2005년도부터 센터 설립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시작한 해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당시 무형유산사업 담당자로서 개인적으로 박상식 교수님(전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이 새로이 알려진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 사업을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에 새롭게 소개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의 유네스코 회원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아이까와 2007). 박상식 대사는 무

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있어서 인간문화재 제도의 중요성을 다른 대사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연행자 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인간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 협약)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대한민국은 무형문화유산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 왔습니다.

## 서론

유네스코가 2003년에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무형유산협약)은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2006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2009년 11월 현재 116개 협약 당사국 중 18개국은 아태지역의 국가들이다. 협약은 전례 없이 빠르게 채택되었고 신속하게 발효되었다. 2006년 11월 이래 협약 정부간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네 차례 개최되었고, 운영지침은 2008년 6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두 개의 목록의 첫 번째 등재와 모범사업 선정은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목록들은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이하 긴급보호목록)'과 '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이하 대표목록)'을 의미한다. 모범사업 선정 목록(*Register*)이라 함은 협약 제18조에 의해 수립된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협약 제18조 하의 모범사업) 이 두 개 목록의 첫 번째 선정작업은 협약이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첫 번째 등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무형유산협약의 미래에 일련의 과제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협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 강화,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협약 이행을 둘러싼 개념상의 과제, 2장에서는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크센터가 어떻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 1. 개념상의 과제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무형유산목록 등재 심사 보조기구(Subsidiary Body(이하 심사보조기구)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111개의 신청서 중 5개 신청서만 완성된 것이었고 나머지 신청서들은 미완성 상태였거나 추가로 보완이 필요했다. 심사 보조기구는 111개의 신청서를 심사하였고, 2009년 목록에 76개의 등재신청유산을 등재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이 권고에 따라 2009년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76개의 유산을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표목록에는 현재 166개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 90개의 유산은 앞서 실시된 결작 사업에서 이전된 것이다.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세부 분석(ITH/09/4.COM/CONF.209/13, 20번째 단락) 결과, 심사보조기구의 승인 권고를 받지 못한 35개의 신청유산 중 26개의 신청서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제1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약 당사국 대부분이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협약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1조와 함께 협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다.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구전 전통, 음악, 춤, 수공예 등 여러 영역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무형유산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는 다차원적이며 ‘관습, 표출, 표현, 지식, 기술’에 대한 정의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와는 달리, 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주요구성요소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수공예품 같은 최종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의 유산을 의미한다.

게다가 무형유산협약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유산이 계속 살아서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살아 유지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대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재창조된다……” 따라서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 안에서 변화해야 하며,

공동체는 자연적 변화와 사회적 역사의 흐름에 맞춰 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협약의 정의를 살펴보면 “[...] 공동체, 집단, 그리고 때로는 개인이 ‘문화적 표현’을 그들의 문화 유산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소유자와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명기하고 있다. 협약은 여기서 연행자 공동체가 유산의 소유자이며 따라서 연행자 공동체가 유산을 계획, 결정,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속한다고 확정된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유산이 “공동체와 집단”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해주고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들은 유산이 단절 없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창조성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협약의 정의를 보면 유산은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이나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요건과 양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정의 중 이 부분 때문에 유산은 문화 상대주의와는 구분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린 정의 중 ‘어떻게’와 ‘누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협약의 주요 목적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요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보장’,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국제 협력 제공’을 의미한다(제1조).

‘보호’라는 용어는 제2조 3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특히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협약의 주요 목적이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전수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의 생명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연구자나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연행자 공동체 자신이다. 물론 연구자와 정부는 공동체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현재 공동체 사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형문화유산 표현

물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은 연행자 공동체만이 할 수 있다. 환경과 자연 그리고 역사의 변화에 따른 유산의 계속 유지 여부, 혹은 유산을 변형 내지 재창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연행자 공동체뿐이다.

그러나 국제 문화유산 무대에 무형문화유산의 다차원적인 정의를 도입함에 따라 협약은 역시 당사국들 사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협약의 시행을 둘러싼 첫 번째 과제는 협약 속의 명시된 협약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행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서 제출된 첫 번째 등재신청유산 중 일부 국가에서 몇 십 년 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 널리 간주되었던 일부 유산들은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특히 선진국에서 나온 무형의 문화적 표현이 이를 시작했던 공동체에 의해 더 이상 연행되지 않거나 전문 연행자가 연행을 하여 더 이상 원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박물관의 일부’가 된 경우 협약상의 정의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재창조’ 없이 ‘보존’된 다른 무형문화유산들이나 국보로서 ‘진정성 *authenticity*’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에도 역시 협약상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협약 당사국이 당면한 진정한 과제는 협약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정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정도는 다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두 번째의 개념상의 과제는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의 목적, 의미, 기능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표목록의 심사보조기구가 지적했듯이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신청유산의 숫자에 두드러진 불균형(2009년 등재신청유산의 경우 대표목록 111개, 긴급보호목록 15개)’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사보조기구는 정부간위원회와 총회가 긴급보호목록의 중요성과 긴급보호목록이 협약의 목적상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을 상기시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경향은 2010년에 더욱 악화되어, 대표목록에는 147개의 등재유산신청서가 제출되었던 반면, 긴급보호목록에는 제출된 유산신청서는 4개(유네스코, 2009년)에 불과했다. 대표목록에 등재된 많은 유산들이 긴급보호목록 신청유산으로도 제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두 목록 중 긴급보호목록은 보호라는 협약의 첫 번째 목적을 이행하고, 대표

목록은 무형문화유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는 세 번째 목적을 이행한다. 그러므로 정부 전문가들은 협약 협상과정이나 위원회와 총회에서 긴급보호 목록의 중요성과 이 목록이 협약 목적의 핵심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다.(아이카와, 2009년).

그렇다면 왜 수많은 협약당사국들이 등재의 첫 번째 심사과정에서 대표목록을 더 선호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협약당사국들이 제출된 등재신청서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산이 등재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표목록의 의미와 역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이 긴급보호목록보다 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협약 당사국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이라는 제목 자체가 모호하다. 협약의 제16조는 이 목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라서 이 목록은 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무형문화유산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킨다. 협약은 대표목록에 대한 정의는 물론이고 ‘대표 representative’라는 용어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고려할 때 ‘대표’라는 용어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을 제목이 내포하는 것처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대표’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대표목록이 더욱 명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심사보조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협약 당사국들은 대표목록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 등재된 유산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유네스코, 2009년).

또 다른 이유로는 협약당사국들이 주요 기준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universal and outstanding value*)’가 있는 명성 높은 세계 유산 목록에 대한 작업을 35년 이상 해 오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협약당사국들에게는 1972년 협약 하의 세계 유산 목록에 유산이 등재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인 이른 바 ‘위험목록(*Endangered List*)’에 자국의 유산이 포함될 경우 ‘불명예(*dishonour*)’라고 생각하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고,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긴급보호목록에 오르는 것 역시 세계유산목록의 위협에 처한 목록에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무형유산협약상의 긴급목

록은 주요목적 자체가 국제적인 틀 안에서 유산 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불명예’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약 당사국들이 긴급목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인식 및 두 협약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며, 성공할 경우 현재의 불균형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등재 신청서의 검토에 적용하는 엄격함의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목록들은 세 가지 공통 기준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의 양립성(제1기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와 그들의 자유로우면서도 사전에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전달된 상태에서의 합의(제4기준), 목록화(제5기준)가 그것이다. 모든 신청서들은 위원회가 심사하지만, 위원회 심사 이전에 운영 지침에 따른 다른 단체들이 검토한 것들이다. 따라서 검토에 적용된 엄격함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산은 전문 NGO, 연구 기관, 전문가 집단 등을 포함한 적어도 두 개의 기구에 의해 검토되는 한편, 대표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산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인 정부간위원회 구성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보조기구가 검토한다. 첫 번째 심사과정에 두 개의 목록에 제출된 신청 유산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대표목록 신청 유산의 경우 심사보조기구에 의해 좀 덜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으며 심사보조기구는 심사 작업 수행 시 정치적인 함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긴급보호목록에 제출된 ‘The Rite of the Kalyady Tsars (Christmas Rite in Belarus)’라는 제목의 신청 유산 심사에 지정된 전문가 한 명은 세대간 전승 메커니즘이 적었기 때문에 연행의 지속성에 대한 제1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간주했다(ITH/09/4.COM/COF.209/14, page 5). 이와 반대로, 대표목록에 제출된 일부 신청 유산의 경우 기술적인 근대화와 사회변화의 결과로 인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된 유산들이 등재되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과제는 두 개의 목록의 등재 심사에 사용하는 엄격함의 정도를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실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제1기준의 IV, V와 관련해서 말이다.



## II. 운영상의 과제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된 첫 번째 111개 신청서를 검토한 심사보조기구는 몇 가지 권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권고사항은 다음의 요인들에 의해 비롯된다. (i) '공동체, 집단, 개인의 가능한 한 최대의 폭넓은 참여'를 정한 제4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 주체인 협약 당사국과 심사보조기구가 직면한 문제들, (ii) 심각한 지리적 불균형, (iii) 심사보조기구, 정부간위원회, 사무국의 제한된 심사 역량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심사 가능한 신청서 수, (iv) 소수의 다국적 신청 유산 등이 그것이다(유네스코, 2009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등재 신청서 준비 절차(두 목록 모두 제4기준이 적용)와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과정에서(긴급보호목록에 제3기준 적용) 어떻게 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연행자인 공동체, 집단,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많은 국가들에게나 심사기구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사보조기구는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이 협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상기하고 있다. 이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제2조), 반드시 목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제11조), 당사국들은 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 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5조, ITH/09/4.COM/CONF.209/13 - 10번째 단락, 23번째 단락).

물론 무형유산보호협약은 연행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시킴으로써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볼 때'(2003년 협약 제2조 정의)에만 비로소 무형문화유산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념적인 변화를 이룬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개념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운영상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진보된 형태의 협약으로 평가받는다. 심사보조기구가 기록하고 있듯이 목록화 작업, 보호, 신청서 준비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은 두 가지 목록에 유산을 등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약 당사국 정부 대부분이 이러한 종류의 문화유산 관리 방법에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협약 당사국들이 제4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직면했던 이유이다.

더구나, '협약 이행시 공동체, 지역, 개인의 참여'와 관련된 논쟁은 몇 차례 열렸던 정부간위원회를 무위로 만들었다(아이까와, 2009년). 결국 당사국들의 총회는 운영지침의 제3장, 3.1번째 단락의 내용을 승인하는 한편, 일부 수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집단, 적절한 경우, 개인과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문가, 전문센터, 연구기관'이 이에 더해져 '공동체, 집단, 개인'은 더 이상 운영지침에 있어서 독자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구체적인 조치방법이 운영지침의 76번째 단락부터 86번째 단락 사이에 신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활동 보호 관리에 있어 '공동체, 연구기관, 전문가센터,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되거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유 받는다. 협력 메커니즘을 만든 다든가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 힘쓴다거나 공동체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상의 주요과제는 어떻게 하면 당사국들이 보호활동을 관리하는 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작업을 추진할 것이고 보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신청된 111개의 등재 신청서 중 64개(58%)가 아태지역에서 신청된 것이고 이 중 일부국가는 10개 이상의 유산을 등재 신청한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5개, 그리고 아랍 국가는 1개만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심사보조기구는 신청 등재물이 지리적 대표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유네스코, 2009년). 이러한 불균형은 2010년 주기 중 제출된 등재 신청서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때 제출된 등재 신청유산 147개 중 60% 이상이 아시아의 유산들인 한편, 아프리카에서 신청된 것은 1개에 머물렀다.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제출되는 등재신청유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간위원회, 심사보조기구, 사무국이 각각의 책임을 다하여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심각한 문제'(유네스코, 2009년)이다. 심사보조기구는 이를 강조하며 위원회에 연간 심사할 수 있는 신청 유산을 상한을 100개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리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리고 심사과정을 실행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신청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보조기구는 당사국의 연간 신청 유산수를 3개로 하고, 위원회가 연간 심사하는 신청 유산의 상한을 100개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이 문



코 193개 회원국들 중 77개국이 여전히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Ⅲ.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정보센터의 역할

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소위 카테고리 2 기구 지역센터 4개의 설립이 최근에 있었던 35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러한 센터 중 하나는 2006년 페루에서 설립되었고 다른 센터 하나가 조만간 불가리아에서 설립될 것이다. 아시아 센터 4개 중 3개가 동아시아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에서 설립될 것이며, 이 센터의 활동은 아태지역의 유네스코 회원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테헤란에 설립될 예정인 지역센터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이다. 동아시아에 설립될 3개의 센터 중 정보와 네트워크는 한국 센터가, 중국 센터에서는 교육, 일본 센터에서는 연구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 국제정보센터는 정보와 네트워킹이라는 영역에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센터는 무형유산협약의 기본적인 방침이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 기관, 전문가, 연행자 공동체와 시민 사회에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무형유산협약의 목적(제1조)과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제2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센터는 적절한 등재신청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두 목록과 모범사례등록의 목적, 의미, 기능의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센터는 모범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는 바, 두드러지는 것으로 정부간위원회의 협약 제18조 하의 목록 *Register*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센터는 또한 무형유산협약의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이 다수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카테고리 2 기구 4개가 곧 아시아에서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 센터는 아태지역 및 태평양 소지역 *Pacific Sub-Region*의 국가 정부, 기관, 시민 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협력관계는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형태의 등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아프리카나 아랍 국가처럼 저평가된 국가들이 아시아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태지역 밖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이는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19조와 양립하는 것이다.

운영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가 상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공동체와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국적인 유산의 등재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센터는 이 지역의 NGO, 연구 기관,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하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협약 사무국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긴급보호목록이나 미화 25,000달러 이상의 재정적인 원조 요청을 심사할 때 사무국의 심사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태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 중 18개국만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태평양 소지역 *Pacific Sub-Region*의 15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파푸아 뉴기니만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그러므로 한국 센터는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결론

새로운 무형문화유산협약 초안의 마련 이면에 놓인 목적 중 하나는 세계유산 목록의 지리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등재 주기 중 무형문화유산협약의 두 개 목록과 협약 제18조 내의 목록 *Register*을 살펴보면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협약의 목적과 기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록들과 제18조 하의 목록의 기능과 협약 전문에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 보호활동에서 연행자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협약과 1972년 협약(세계유산목록)간에 개념상의 혼란이 생겼고, 이는 무형문화유산협약이 이제 1972년 협약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두 협약의 위원회가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인데, 이는 세비야(Seville)(유네스코 제33차 총회 결정문 5)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의와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었다. 이미 최소한 10종목 이상의 유산이 두 협약 하에 등재되었다. 유산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협약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개념 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라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반면,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 등재되는 유산은 탁월성이 아닌 보호 조치 및 연행 공동체의 합의 등 다른 기준 하에 등재된다는 것이다. 통합적인 접근법에서는 항상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목록과 제18조상의 목록(Register)에 유산을 등재시키려는 첫 시도는 정부간 위원회에 하여금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방법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단점과 모순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고 더욱이 실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러한 단점들 중 일부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운영지침(총회 승인 요함)을 수정을 요청하는 권고 덕분에 개선되었다. 다른 단점들은 향후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목록에 아시아 국가의 등재 유산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 역시 주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평가된 지역, 특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처럼 열성적이 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권고와 기술 및 재정적 원조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 정보센터는 협약에 구체화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센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보호 활동에 있어서 연행 공동체로부터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관리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센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 메커니즘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서 동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의 국가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노리꼬 아이카와

- \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개념적 발전, 무형문화유산보호 : 과제와 접근』, J. Brake 편저, 예술과법연구소, 2007, 43~72쪽.
- \_ 『La Convention de l'UNESCO pour la sauvegarde 여 patrimoine immateriel et sa mise en surie』, C. Khaznadar 편저, 2009, 13~45쪽.

### 유네스코 문서 2009 ITH/09/4OM/COMF209/Decisions.

- \_ ITH/09/4.COM/COMF.209/13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 등재신청 평가
- \_ ITH/09/4.COM/COMF.209/14 무형문화유산긴급보호목록 등재신청 평가
- \_ ITH/09/4.COM/COMF.209/15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활동 제안 평가(18조)

### 프랑스와 리비에라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의 연설문

WHC.09/33 COM/20 Decisions.